

5. 租稅減免規制法中 改正法律

法律 第4451號 1991. 12. 27

제57조제1항의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59조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주택건설등록업자”를 각각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로, “국민주택”을 “국민주택 또는 사원용주택”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주택건설등록업자”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로 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종업원”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사원용주택건설자”라 한다)

제66조의3중 “제57조제1항·제58조제1항·제60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중”을 이 “이 범중”으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양도함으로써”를 “1994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로 한다.

제67조의4제1항중 “100분의 50(10년 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6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5(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박람회조직위원회가 대전세계박람회의 대전세계박람회의 개최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67조의6제1항본문중 “1986년”을 “1991년”으로 “1991년”을 “1996년”으로 한다.

제67조의7제1항중 “1986년”을 “1991년”으로, “1991년”을 “1996년”으로 한다.

제67조의10중 “1991년”을 “1996년”으로 한다.

제67조의11의 제목 및 제1항중 “5년 이상”을 각각 “10년 이상”으로 하고, 동 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중 “2년 이내”를 각각 “5년 이내”로 한다.

제67조의12의 제목 및 제1항중 “2년 이상”을 각각 “5년 이상”으로 한다.

제67조의13의 제목 및 제1항중 “2년 이상”을 각각 “5년 이상”으로 한다.

제67조의15제1항중 “2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한다.

제6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제71조의3제1항중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를 “소득금액에”로 한다.

제71조의4 및 제7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4(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도로·상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사회간접자본”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법인으로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

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익금에 산입하는 투자준비금중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의5(주차시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차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주차시설중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의 100분의 100

2. 주차시설중 기계식 주차설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의 100분의 50

제72조제1항 및 제72조의2제1항중 “소득세”를 각각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로 한다.

제7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7(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①내국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는 당해 보육시설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당해 보육시설의 취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금액에 한하며 토지를 새로이 매입한 경우 그 매입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신축계획서 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에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74조제1항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3조”를 “전기사업법 제2조”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5호중 “국제무역산업박람회”를 “대전세계박람회”로 한다.

제7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이하 “박람회 참가자”라 한다)가 대전세계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제76조 및 제7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대전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박람회 참가자가 대전세계박람회장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76조의2(박람회 참가자가 무상양도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전세계박람회 종료후에 박람회 참가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람회장 관리주체에게 출품물을 무사용로 양도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79조제1항중 “제75조·제77조 및 제78조”를 “제75조 내지 제78조”로, “제75조제5호”를 “제75조제5호 및 제76조”

로 한다.

제81조제5호중 “농민”을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농가의 영농규모적정화사업으로 인한”을 “농가의 영농규모적정화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으로 인한”으로 하며, 동조제10호중 “농민”을 “농민(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16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제8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박람회 참가자가 대전세계박람회장 시설의 제작·건설 및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87조제2항중 “제36조·제40조”를 “제36조”로, “이 법 부칙 제22조”를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46조의3”을 “제46조의3·제54조의4”로, “제72조 또는 제72조의2”를 “제72조·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7”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36조·제40조”를 “제36조”로, “제46조의3 또는 이 법 부칙 제22조”를 “제46조의3·제71조의5 또는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2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72조 또는 제72조의2”를 “제72조·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7”로 하며, 동조제6항중 “제72조의2 및 제72조의5”를 “제72조의2·제72조의5 및 제72조의7”로 하고, 동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내국인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5조·제40조의4제1항·제40조의8·제43조의4·제45조의3 또는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⑧내국인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연도에 제85조제2항·제85조의2 또는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88조제1항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국법인(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공법인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

이 정하는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88조제1항제1호중 “제36조·제40조”를 “제36조”로, “제54조의3”을 “54조의3·제54조의4”로, “제71조의2·제71조의3”을 “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5”로, “이 법 부칙 제22조”를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2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3항 본문”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72조의5제1항”을 “제72조의5제1항·제72조의7”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 및 제3항단서”로 한다.

제88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가세액을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

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88조제2항제1호중 “제36조·제40조”를 “제36조”로, “제71조”를 “제71조·제71조의5”로, “이 법 부칙 제22조”를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2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72조의5제1항”을 “제72조의5제1항·제72조의7”로 한다.

제88조의2중 “제67조의4 및 제72조의4”를 “제67조의4·제67조의11·제67조의12 및 제72조의4”로 한다.

제88조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3(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법인이 제42조의2·제57조 내지 제60조·제62조·제67조의4·제67조의11·제67조의13·제67조의15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이를 3억원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5”를 “제72조의2·제72조의5 또는 제72조의7”로, “소득세”를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5”를 “제72조의2·제72조의5 또는 제72조의7”로 한다.

제90조본문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3항본문”으로, “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5”를 “제72조의2·제72조의5 또는 제72조의7”로 하고, 동조단서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3항본문”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3항본문”으로 “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5”를 “제72조의2·제72조의5 또는 제72조의7”로 한다.

제92조제2호중 “제72조 및 제72조의5”를 “제72조·제72조의5 또는 제72조의7”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보육시설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

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보육시설을 종업원의 자녀를 위한 보육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때

제93조중 “1991년12월31일”을 “1996년12월31일”로 한다.

별표의 제17호·제27호·제42호·제56호 및 제7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제111호중 “제49조”를 “제49조 또는 제50조”로 하며, 동표의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20호 내지 제1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 27.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
- 42.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대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및 동연합회
- 56.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71.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소
- 112.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 120. 한국행정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행정연구원

- 1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22.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 123. 영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 영업조합
 - 12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 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 125.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 하여 설립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126.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무선국관리사업단
 - 127.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전기안전공사
 - 128.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 된 한국노동교육원
 - 129. 한국조세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 된 한국조세연구원
- 법률 제4285호 부칙 제19조단서중 “1991년12월31일”을 “1996년12월31일”로 한다.
- 법률 제4285호 부칙제23조제2항중 “자산 재평가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을 “자산재평가적립금을”로 한다.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 3 조 (비과세되는 이자소득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 4 조 (분리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 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5 조 (증권시장안정기금에 출자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분되는 것 부터 적용한다.

제 6 조 (공공법인에 대한 재평가세 비과세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 7 조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 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 8 조 (사내근로복지기금등에 대한 기부 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9 조제2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9 조 (대전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

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대전세계박람회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거나 투자가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55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던 자본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57조·제59조·제62조·제66조의3·제67조의2·제67조의4·제67조의5·제67조의6·제67조의7·제67조의10·제67조의11·제67조의12·제67조의13 및 제67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2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14조(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를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1월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6조(특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5호·제76조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인지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 당시 조립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1992년12월31일 이전에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②제5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2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③1991년12월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1994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다.

④1992년1월1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으로서 그 목장을 1992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목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목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11의 규정에 의한다.

⑤1992년1월1일 현재 2년이상 계속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서 그 공장을 1992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하거

나 그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12의 규정에 의한다.

⑥1992년1월1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그 토지 등을 1992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한다.

⑦1992년1월1일 현재 2년이상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그 토지등을 1992년12월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이유 □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1년말에 적용시한이 끝나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을 1996년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여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기타 지원의 필요가 적거나 불요불급한 감면은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과세의 공정성을 높이는 반면, 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사내복지사업의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대전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부문에 대한 지원 등 일부의 조세지원제도를 확충·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1. 농·어민등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예탁금이자의 비과세한도를 예탁금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출자금의 경우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2. 공공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 종전에는 자산재평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던 것을 1993년 1월 1일부터 다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와 같이 재평가세를 과세하도록 함.
3. 중소기업이 고객이나 거래처에 지출한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2와 매출액의 1천분의 2 및 기본금액 600만원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본금액 600만원을 1천200만원으로 확대하여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과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를 전액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
5. 대전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을 확대함.

- (1) 대전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이 박람회전시용으로 사용할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사업연도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함.
- (2)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함.
6.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70 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되,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세의 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199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함.
 7.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폐지하되, 그 폐지시기는 1995년 1월 1일로 함.
 8. 종업원을 위한 주택을 짓고자 하는 기업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함.
 9. 임대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도록 함.
 10. 목장이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요건중 목장의 경영기간을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되고, 공장의 가동기간을 2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함.
 11. 주차전용시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제도를 신설하여 주차용건설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추가로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함.
 12. 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13.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의수족·휠체어·보청기 등 장애인용 보장구를 부가

가치세 수세율적용대상으로 전환함.

14. 현재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어 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에 과세하는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감면하도록 함.
15.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을 현행 1991년 12월 31일에서 199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법제처 제공〉

5-1. 租稅減免規制法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3545號 1991. 12. 31

제50조제1항본문중 “법 제62조제1항”을 “법 제62조제1항본문”으로 하고, 동항 제3호중 “주택건설등록업자”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62조제1항”을 “법 제62조제1항본문”으로 하고, 동조 제3항 내지 제8항을 제5항 내지 제10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62조제1항제2호에서 “무주택종업원”이라 함은 주택이 없는 종업원으로서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를 제외한다)인 임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④법 제62조제1항제2호에서 “사원용주택건설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으로서 1회에 5호 이상의 사원용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말한다.

제50조제5항(중전의 제3항)본문중 “국민주택”을 “국민주택 또는 사원용주택”으

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원용주택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원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제50조제6항(중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중전의 제5항)중 “주택건설등록업자”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로 한다.

⑥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당해 사업을 폐업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사원용주택건설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해산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3. 사원용주택건설자가 사원용주택의 신축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0조제8항(중전의 제6항) 본문중 “주택건설등록업자”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택건설업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제50조제9항(중전의 제7항)중 “제6항”을 “제8항”으로, “주택건설등록업자”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 주택건설자”로 하고, 동조제10항(중전의 제8항)중 “국민주택을 건설한 주택건설등록업자”를 “국민주택 또는 사원용주택을 건설한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주택건설자”로 한다.

제55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 또는 그와 연결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제55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7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

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농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말한다.

제55조의9의 제목중 “5년 이상”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본문·동항제2호 및 동조제2항중 “5년간”을 각각 “10년간”으로 한다.

제55조의10의 제목중 “2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항중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를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제1호중 “시공하지 아니하거나”를 “준공하지 아니하거나”로 한다.

①법 제67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으로,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신공장이 준공되지 아니하거나 신공장을 취득하지 아니하며 신공장의 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일 또는 취득일까지는 구공장의 가액 이상의 공장을 준공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구공장 또는 신공장의 대지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5항 및 법 제67조의1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11의 제목중 “2년이상”을 “5년이상”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2년”을 각각 “5년”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1호중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제1호에 규정된”을 “재무부령이 정하는”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제3호 및 동조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text{면제세액} \times \frac{\text{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 취득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금액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대체취득자산금액의 합계액}}{\text{토지등의 양도가액}}$$

3. 법 제67조의13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text{면제세액} \times \frac{\text{당해 처분가액}}{\text{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대체취득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대체취득자산의 금액}}$$

⑥제3항단서의 경우에 면제할 특별부가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text{특별부가세산출세액} \times \frac{\text{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대체 취득자산의 금액}}{\text{토지등의 양도가액}}$$

제5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시설 및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중 탈황시설(탈황시설의 경우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투자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공해방지시설”이라 한다)

제5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그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용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1992년 6월 30일 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제조업(수산업법에 의한 선상수산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기술개발이나 품질개선을 위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제57조의10 내지 제57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10(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의한 도로
2.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전원설비
3.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자원개발시설·동항제2호에 규정된 수도시설 및 동항제4호

에 규정된 하수종말처리시설

4. 항만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항만 시설
5.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된 신공항사업시설 및 항공법 제2조제6호에 규정된 공항시설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②법 제7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2.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③법 제71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④법 제71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 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준비금명세서(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11(주차시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①법 제71조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차시설”이라 함은 주차장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제공하는 주차시설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증상시 20대 이상의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7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시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주차용건물이 다른 용도와 함께 이용되는 경우 특별감가상각 대상인 건물가액은 건물의 연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주차장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7조의12(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법 제72조의7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보육시설을 착공하거나 준공 또는 구입한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을 착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신축계획서
2. 보육시설을 준공하거나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준공

·구입보고서

제57조의13(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보장구) 법 제7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수족·휠체어·보청기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58조의2 내지 제5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대전세계박람회 참가자의 범위) 법 제7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람회참가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참가계약(위락시설 또는 편의시설에의 참가계약을 제외한다)을 체결한 자
2. 제1호의 참가자 또는 박람회조직위원회와 전시시설(전시관 또는 구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건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제58조의3(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국내에서 생산된 대전세계박람회용 물품의 범위) 법 제76조에서 “대전세계박람회장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시시설의 제작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전시시설의 제작 또는 건설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비치용물품을 제외한다.

제58조의4(박람회장관리주체의 범위)

법 제7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람회장관리주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2.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해산된 후 그 박람회장 관련사업 및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

제60조제1항본문중 “제9호 내지 제12호”를 “제10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 동항의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중 “제2항제1호 내지 제7호”를 “제2항제1호 내지 제8호”로 한다.

1. 공기조절기(냉방냉풍기에 한하며 스탠드형의 것과 멀티형의 것을 제외한다)

8. 마이크로웨이브오븐

제61조제3항중 “제39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36조제8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63조제6항제3호중 “법 제43조의5 및 법 제71조의3”을 “법 제43조의5·법 제71조의3 및 법 제71조의4”로 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법 제88조의3에서 “산출세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44조·제45조의2·제46조·제46조의4·제61조·제67조의3·제67조의5·제67조의10 및 제67조의14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산출세액
2. 국가기본법 및 조약과 법 제3조제1항 각호에 법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별표 4] 제4호 및 제5호의 품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항공공업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한 항공공업
5. 방위산업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

[별표 5]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중 제1호의 비용란의 나목①에 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㉔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별표 6] 기술·인력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중 제1호의 비용란의 나목①에 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중 제2호의 비용란의 마목중 “지출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㉔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별표 8] 비고란의 제1호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하고, “공업배치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제2호중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으로, “공업배치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며, 제4호중 “공업배치법”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대전제3공단”을 “대전제3공단 및 대전제4공단”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본문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 3 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등) ①제35조·제36조제6항·제47조·제48조 내지 제50조·제55조의5·제55조

의9·제55조의10제6항 및 제55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1992년 1월 1일 현재 구공장 또는 전환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양도일부부터 1년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6조·제38조의2 및 제55조의10의 규정에 의한다.

③1992년 1월 1일 현재 토지등의 양도일부부터 3년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55조의11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55조의8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대전세계박람회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 5 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등)

①제4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45조제3항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본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6 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제2호 및 제57조

의2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 이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7 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 57조의1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 128조의3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 하여야 한다.

제 8 조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2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2년 6월 30일 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1992년 6월 30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1992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투자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기간중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그 투자금액으로 본다.

□ 개정이유 □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1.12.27, 법률 제445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입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설비투자촉진을 위하여 운용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중소기업등에 대하여 6개월간 연장하는 등 현행의 일부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중소기업해당업종의 범위에 추가함(영 제11조제1항)
- 나. 대전세계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하여 박람회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참가예약부지면적에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전시용 건물의 연면적에 3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당해 기업이 선택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함(영 제44조의3제1항).
- 다. 상장법인에 대한 증자소득공제율을 증자금액의 100분의12에서 100분의10으로 인하함(영 제45조).
- 라. 사원용임대주택건설용지를 사원용주택건설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그 사원용주택건설자의 범위를 1회에 5호 이상 사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함(영 제50조).
- 마. 중소기업등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1991년 12월 31일까지에서 1992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함(영 제57조의2제1항).
- 바.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의 범위와 동 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함.
 - (1)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사회간접자본의 범위를 도로·댐·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발전설비 및 항만설비 등으로 함(영 제57조의10제1항).

(2)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을 한국도로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및 한국공항공단으로 함(영 제57조의10제2항). 〈법제처 제공〉